제769회 신설·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1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산업통상자원부)	1.수소전문기업 확인 신청(신설)수소전문기업* 확인을 받으려는 기업은 확인신청서 및 매출액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제4조)2.수소연료공급시설, 연료전지의 설치계획 및 수소 수급계획 제출(신설)- 수소연료공급시설·연료전지 설치계획서 제출대상 규정(제5조, 제7조)- 수소의 생산시설·수소연료공급시설 운영자는 수소의 생산·수급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제6조)3.수소용품 제조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세부기준 및 체계 마련(신설)수소용품 제조사업(외국 포함) 허가·등록의 변경사항에 대한 기준 및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최초 완공 후 검사 등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제26조, 제27조, 제35조)4.수소용품의 안전 확보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신설)수소용품 제조사업자가 제조한 수소용품의 검사기준, 표시사항 및 유통 중인 수소용품의 안전관리 세부기준 마련(제40조~제43조)5.수소용품 제조사업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세부기준 마련(신설)수소용품 제조사업에 따른 안전관리자가 이수하여야 할 안전교육의 신청방법, 교육기간, 교육과정 등을 규정(제44조)6.수소연료사용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세부기준 및 체계 마련(신설)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한 시설기준, 기술기준 및 법정검사(완성검사, 정기검사) 실시	1.비중요 2.비중요3.비중요4.비중요 5.비중요6.비중요7.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제45조~제47조)7.수소용품제조허가의 행정처분기준 및 제조사업자 등의 보험금액 규정(신설)- 수소용품 제조허가 및 등록의 행정처분 기준 규정(제49조)-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및 보험료의 할인 기준 규정(제51조)	
2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기획재정부)	1.구매대행업자 등록대상 범위(신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해야 하는 구매대행업자의 범위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자로 정함	1.비중요
3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신설) 소프트웨어 진흥단지 지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 및 소프트웨어 진흥단지의 발전에 필요한 조건을 제시함 - 활성화를 위해 시행령의 진흥단지 지정요건(SW기업수) 완화	1.비중요
4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개정안 (기상청)	1.형식승인 대상 기상측기 규정(신설) 형식승인 대상 측기 10종(온도계, 강수량계, 기압계, 습도계, 풍향·풍속계, 일사·일조계, 적설계, 증발계)을 규정하려는 것임 2.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요건 규정(신설) 형식승인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1.비중요 2.비중요
5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개정안	1.형식승인의 신청·방법·절차·변경신청·시험기준 및 취소	1.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기상청)	규정(신설) 형식승인의 신청·방법·형식승인서 발급·변경신청·시험기준의 제정 및 개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 2.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변경지정 및 취소 규정(신설)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지정절차·변경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 3.기상측기 검정과 관련한 자료제출 기간 변경 및 내용 추가(강화) 검정유효기간만료일 10일 전 검정 신청 검정요원의 현장접근 및 안전조치 협조방안 마련 검정설비의 보유 또는 공동활용 임차를 증명하는 서류 추가 4.기상측기의 검정방법 규정(신설) 기상측기의 검정방법 등을 규정하려는 것	2.비중요 3.비중요 4.비중요
6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 (국토교통부)	1.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신설)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위임한 기계설비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인정기능사 및 민간자격증 중 기계분야와 관련된 자격으로 정하고, 기계설비 관련 학과기준을 기계, 건축, 용접 등 기계설비와 관련된 분야로 인정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1.비중요 2.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2.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신설)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실무경력을 해당 자격의 취득 전과 후로 나누어 다르게 규정하고,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와 설계·시공·감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자격 인정 범위를 각각 다르게 구분하여 구체화함, 해당 자격의 취득 전후 업무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구체화함 -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및 경력 기준을 해당 분야의 산업기사, 기능사, 기계설비기술자 중 일부 기술인력 등으로 정하고, 별도로 갖추어야 할 소정의 기준(경력 인정기간, 교육 이수여부 등)을 규정함	
7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제38조의2, 신설)(신설) 가.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의 종류(안 제38조의2 제1항)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는 부가통신사업 현황 파악을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기초조사와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 자료 확보를 위해 기초조사 시행 시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심층조사로 구분하여 실시 나.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대상(안 제38조의2 제2항) 기초조사는 법 제22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등록한 부가통신사업자 및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심층조사는 특정한 사업분야 또는 사업내용의 현황 파악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함	1.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다.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내용(안 제38조의2 제3항)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는 기업 일반·재무현황, 기술·인력현황, 거래정보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함 라.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절차(안 제38조의2 제4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종류·대상·대상 선정 기준·방법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을 조사를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함 마.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방법(안 제38조의2 제5항) 실태조사는 면접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바.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의견수렴(안 제38조의2 제6항) 실태조사 시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사.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자료 요청(안 제38조의2 제7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기업, 연구기관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요청할 수 있음	
8	해양치유 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해양수산부)	1.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기준(신설) 구성·내용의 적절성, 전문인력 및 시설·장비의 확보, 안전성 확보, 평가방안 마련 등 해양치유 프로그램 인증을 위한 주요 기준	1.비중요
9	해양치유 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해양수산부)	1.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민간투자자 자격 요건(신설) ㅇ시공능력, 사업구역 내 토지 면적, 투자회사 또는 법인의 성격을 고려하여 민간투자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ㅇ이와 관련하여 민간투자자의 자격요건을 6가지로 한정하여 규정 2.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요건(신설) ㅇ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교육시설 및 장비, 전문 교수요원, 운영경비 조달계획 등 해양치유 전문인력의 양성기관 지정기준을 규율 3.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해제(신설) ㅇ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전	1.비중요 2.비중요 3.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해제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을 하지 않은 경우,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지원한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	